2011. 01. 12.

수 신 : **제천시의회의장**

제 목 :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

「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 임 1. 발의의원 서명서 1부.

2.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발 의 자 : 김 꽃 임 의원 (서명또는 날인)

외3인

신 결	의 장	최종대	결재(공람)	부의장	
시행일시	2011. 1. 12. 시 분	번호 142		국 장	
시행과	제천시의회			전문위원	
담당				담 당	강 보 재

「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의안발의서명서

의원성명	서명 또는 날인	비 고
김 꽃임		
이 정임	이 정임	
오 선균		
조 덕희	조 덕희	

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번호	1483

발의연월일 : 2011. 01. 12.
발 의 자 : 김꽃임 의원외 3인

1. 제안이유

○ 장애인이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골자

○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
○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센터 운영, 전기충전소 설치·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 및 안 제4조)

○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)

○ 지정 수리센터의 취소 및 지도 감독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8조, 제9조)

3. 의견수렴 및 검토결과

○ 방 법 :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제천시 홈페이지게재, 관련부서 검토

○ 기 간 : 2010. 10. 27(수) ~ 2010. 11. 16(화)(20일간)

○ 의견제출

- 제 출 자 : 제천시장(사회복지과장)
- 내　　용 : 예산 30,000천원 소요예상, 기타 조례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없음

4. 관계법령 : 장애인복지법

붙　임 : 1.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　1부.
2. 관련부서 검토의견　1부.
3. 2011년도 업무보고 자료 1부.　끝.

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

2011. . . 조례 제 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따라 제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 장애인이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장애인"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.
2. "지원대상자"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("전동휠체어"를 포함한다)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.
3. "전동기기"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.

제3조(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) 제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(이하 "휠체어 등"이라 한다)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(이하 "수리센터"라 한다)를 전문 업체와 지정·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전동기기 충전소)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관련 기관,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)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시에 거주

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6조(수리비용 지원기준)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.

② 지원대상자 및 기준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,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
2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,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

제7조(수리비용 지원절차)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·면·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, 읍·면·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.

1.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
2.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·면·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,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.

③ 읍·면·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,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

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읍·면·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리센터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
2.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
3.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

제9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지정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

1. 인적사항(해당란에 ☑표시)

성 명		생년월일		성별	남 · 여
주 소	(전화번호 :)				
장 애 명		장애등급	급		
수급유형	□수급자	□차상위	□일반		

2. 수리 신청내용(해당란에 ☑표시)

보장구 유형	□휠체어	□전동휠체어	□전동스쿠터
수리가 필요한 부위		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	

「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제천시장 귀하

	수수료
	없음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일반용지)]

[별지 제2호서식]

연번 :						

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

장애인	성 명		생년월일		성별	남·여
	주 소			전화번호		
	장애명			장애등급		급
수급유형		□수급자	□차상위	□일반		
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		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				
□ 휠체어 □ 전동휠체어 □ 전동스쿠터 **※해당 유형에 체크**						

「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천 시 장 직인

확인자 : 읍면사무소·동 주민센터

담 당 : (서명 또는 인)

(○ ○ 수리센터장) 귀하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일반용지)]

[별지 제3호서식]

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

업체명 : 기간 : . . .~ . . .

연번	수리 의뢰자 인적사항					수리비 청구내역				
	성명	생년월일	주 소	장애종류, 등급	연락처	보장구 유형	수리내역	수급유형	수리비	신청금액
								수급자, 차상위, 일반		

297mm×210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지)]

[별지 제4호서식]

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

수리 업체	업체명		대 표 자	
	주 소		전화번호	
수리 기사명		수리기사 자격증 번호		

청 구 내 용

장애인	성명		생년월일		수급 유형	□수급자 □차상위 □일 반
	주소			장애명 및 등급		
보장구 수리 내역	보장구유형	□휠체어 □전동휠체어 □전동스쿠터		비용청구금액		천원
	수리 및 교체 부위			소요비용 산출내역		

「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업체 (서명 또는 인)

제천시장 귀하

※ 구비서류 : 수리비 확인서 1부	수수료 없음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일반용지)]

2010 Census 인구주택총조사 [10월22일~11월15일]

제 천 시

수신자 제천시의회의장(의회사무국장)

(경유)

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관련부서 검토의견 제출

1. 제천시의회 의회사무국 - 3528 (2010. 10. 28)호와 관련됩니다.

2. 상기호와 관련하여 제천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(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)의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○ 조례안 및 발의의원

조 례 안	발의의원
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·운영 및 지원 조례안 (사회복지과)	이정임 의원
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센타 지원에 관한 조례안 (사회복지과)	김꽃임 의원
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(사회복지과)	최상귀 의원

붙 임 : 검토의견 1부. 끝.

제천시장

★주무관 법무감사팀장 전략기획실장

협조자 주무관

시행 전략기획실-11187 (2010.11.05.) 접수 의회사무국-3610 (2010.11.08.)

우 390-701 충북 제천시 시청길 15(천남동 12-2번지) / http://www.okjc.net
전화 043)641-5531 /전송 043)641-5499 / oxen6112@korea.kr / 공개 .

검 토 내 역

발의의원	조 례 안	추진상 문제점	지원대상	예산 (단위:천원)	도 사전검토	비고
이정임 의원	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·운영 및 지원 조례안	없음	1개소	150,000	반영 (2011년 충청북도 예산액 반영)	도비 50%
김꽃임 의원	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센타 지원에 관한 조례안	없음	60명	30,000	미반영	
최상귀 의원	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안	없음	1,200세대	70,000	미반영	

장애인복지팀 **특수시책**

16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이동권 확보

〈성 과 지 표〉

○ 전동보장구수리센터 운영 : 장애인협회 및 장애인복지관에 위탁
○ 전동보장구 배터리 급속충전소 확대운영 : 5개소 → 11개소

□ 사 업 개 요

○ 장애인 전동보장구 지원현황

구분	합계	전동스쿠터		전동휠체어		내구연한
		수급자	차상위등	수급자	차상위등	
지원대상자	184	130		54		6년

○ 전동보장구수리센터 운영(사업비 15,000천원-시비)
- 운영주관 : 제천시장애인협회 및 장애인복지관 등에 위탁 운영
- 수리품목 : 전동스쿠터, 휠체어 소모부품·배터리 교체 및 수리
- 대상 및 단가 : 수급자 1인당 20만원 이내, 차상위 1인당 10만원
- 지원제한 : 초과시 자부담, 내구연한내 2회까지만 지원 제한

○ 전동보장구 배터리 급속충전소 확대설치(사업비 3,000천원)
- 기설치(6개소) : 보건소, 청전, 명락노인복지관, 제천시 종합복지관,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
- 확대설치(6개소) : 장애인협의회,신백두학동,교동,화산동,서부영천동,문화체육관리소

○ 전동보장구 안전표지판 부착 : 제천경찰서와 협의 전동보장구에 야광안전판 설치

□ 추 진 계 획

○ 전동보장구수리센터 운영 : 장애인협회 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위탁
- 수리센터 위탁 및 직원(수리기사) 채용 : 2011. 06. 30일한

○ 전동보장구 배터리 급속충전소 확대설치 : 2011. 06. 30일한
○ 전동보장구 안전표지판 부착 : 2011. 05. 30일한

□ 기 대 효 과

○ 정보수집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수리서비스 제공으로 보장구 고장 및 배터리 미충전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
○ 사회참여와 활동범위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와 활동범위확대

타 시·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(광역 2, 기초 8)

구 분	자치단체	비고
서울(기초2)	중구, 양천구	
부산(기초1)	영도구	
대구(기초1)	남구	
광주(광역1)	광주광역시	
전북(광역1)	전라북도	
전남(기초2)	목포시, 나주시	
경북(기초1)	경산시	
경남(기초1)	양산시	